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재 관리인 명칭 도입 및 무자격 가이드 출입 제한 근거 신설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95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문화재 관리인 명칭 도입(안 제49조제4항)	3
2. 문화재 관리인에게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요구, 입장 거부 및 퇴장 명령 권한 부여(안 제49조의2 신설)	7
※ [참고] 프랑스 「관광법전」 (Code du Tourisme)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8.

다. 회 부 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없는 불법 가이드가 판치고 있음. 이들이 왜곡된 역사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문화재 이미지를 훼손함.

현행법상 불법 가이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프랑스는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광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음. 이처럼 불법 가이드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관광지에 입장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함(안 제49조제4항).

나.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자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이 아닐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화재 관리인 명칭 도입(안 제49조제4항)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 ----- 관리단체(이하 “문화재 관리인”이라 한다)----- ----- ----- -----.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각각 보물·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함.

「문화유산법」 제33조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34조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문화유산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를 지원할 수 있음.²⁾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하려는 것으로, 문화유산 관리 주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한편, 2024년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어 현재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불리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문화재 관리인’보다는 ‘문화유산 관리인’이 현행 법체계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개정안에 따른 ‘문화재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 시행령 개정이 동반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조문에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3)에서 법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 ⑤ (생략)

제49조제4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지원대상자를 해당 조문에 한정하여 “소유자등”이라 명명하고 있음에도 법 제49조제4항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별도로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문화재 관리인에게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요구, 입장 거부 및 퇴장 명령 권한 부여(안 제49조의2 신설)

개정안은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격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문화유산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2(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의 자격 확인) ①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 관리인은 인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솔자에 대하여 문화유산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안내 목적이 아닌 단순한 동행, 자원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자격증 또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8조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 종사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4).

개정안은 안 제49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4)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 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 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현관·객실·식당의接客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솔자가 자격증 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자격증 또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인솔자에 대하여 문화유산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안 제49조의2제2항⁵⁾은 “인솔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49조의2제2항도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개정안 시행 시 「문화유산법」 제49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9조의2(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의 자격 확인) ①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 관리인은 인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솔자에 대하여 문화유산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안내 목적이 아닌 단순한 동행, 자원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자격증 또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조6)에 따른 관람료 감면제도를 통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확대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불법 인솔자의 통제는 「문화유산법」을 통한 출입 제한 방식보다는, 「관광진흥법」 체계 내에서의 제도 개선 및 집행 강화가 이루어질 때 개정안이 지향하는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자격증·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안내 목적이 아닌 단순 동행 등의 경우에는 인솔자에게 자격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단순 동행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증·증명서 제시 요구단계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여행업협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확인 기능

-
-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을 문화유산의 관리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현장의 혼란과 관광객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 부담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프랑스의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은 프랑스 박물관 및 역사적 기념물 내의 가이드 투어 진행 시, 국가협의회(Conseil d'Etat)의 법령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급된 가이드-강연사(guide-conférencier)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379

7) 참고 “프랑스 「관광법전」(Code du Tourisme)” 참조

원 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번 역
Article L221-1 Pour la conduite de visites guidées dans les musées de France et les monuments historiques,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réalisant, y compris à titre accessoire, les opérations mentionnées au I de l'article L.211-1 ne peuvent utiliser que les services de personnes qualifiées titulaires de la carte professionnelle de guide-conférencier délivré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s personnes morales mentionnées au III de l'article L. 211-18 ne sont pas soumises à cette obligation.	제L221-1조 프랑스 박물관 및 역사적 기념물 내의 가이드 투어 진행 시, 제L.211-1조 제I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포함)은 국가협의회(Conseil d'Etat)의 법령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급된 '가이드-강연사(guide-conférencier)'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만을 고용해야 한다. 단, 제L.211-18조 제III항에 언급된 법인은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Article L211-18 III.-Ne sont pas tenus de satisfaire aux conditions prévues aux I et II les associations et organismes sans but lucratif appartenant à une fédération ou une union déclarée s'en portant garantes à la condition que ces dernières satisfassent aux obligations mentionnées aux I et II.	제L211-18조 제I항 및 제II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의무가 없는 대상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신고된 연맹 또는 연합회에 소속된 비영리 협회 및 기관이다. 단, 이는 해당 연맹 또는 연합회 자체가 제I항 및 제II항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